

2023년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6. 26.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4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351건(안전번호 제2023-70856호~74206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70856호~70903호(순번 1번~48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70904호~70910호(순번 49번~55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70911호(순번 56번)는 타인의 출판물을 허락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

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70912호~70913호(순번 57번~58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70914호(순번 59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국내 유통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추후 국내 개봉 시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70915호~74206호(순번 60번~3351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6,621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46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153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

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6,758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4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122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에 ‘△△△ △△ △△ △△△△ (△△△△.△△.△△. △△)’, ‘■□■ □□ ■□ ■□’ 등의 제목으로 뮤지컬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등의 영상을 교환·판매한다는 내용을 게시하였음. 게시물에는 게시자가 보유한 녹화물 등의 제목, 공연일, 출연자의 목록이 다량 게시되어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48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48번은 가결하되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번 내지 5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ㄱㄱㄱㄱ'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9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9번 내지 55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9번 내지 55번은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6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의 블로그서비스인 ♣♣♣♣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것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IT 수험서 ‘○○○-○○○○ ○○○○ ○○’의 책에 수록된 내용 일부가 그대로 복제 및 일부 변형되어 특정 블로그에 게시되었고, 해당 수험서의 저자 중 1인이 직접 보호원으로 신고한 건임.
한편, 해당 블로그 운영자는 배너광고, 팝업광고 등을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6번 출판물의 내용을 일부 게시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이런 종류의 출판물은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음. 저런 내용들은 공시성이 강한 것으로 누가 만들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저작자가 특별히 본인 이름으로 출판한 것이 아닌 어디 연구회 이름으로 출판한 것은 사실상 해외 원서를 번역하였거나 일부 편집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기출문제도 다소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그 의견에도 동의함. 그런데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나 해답은 대동소이하더라도 편집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음. 디자인이라던가, 해설 부분이라던가, 표로 그린 부분 등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 기출문제의 비중이 크다거나, 단순히 문제만 나열한 것이라면 애매할 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 하지 않았을 나름대로의 해설과 그림 등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김선화 선임: 해설은 100% 동일하지는 않으나 내용을 가져온 부분이 있고, 표 등은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음.
- C 위원: 표 등의 디자인이 그렇게 독창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 A 위원: 저런 표들도 원서에 다 있었을 법한 것이고 내용면에서도 공시성이 강해서 개인의 창의력이 들어갔을 여지는 적어 보임.
- B 위원: 현재 문항 순서도 똑같이 따라서 만들었음.
- A 위원: 복제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현재 판매중인 출판물인지?
- 김선화 선임: 현재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 시험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어 해당 출판물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 C 위원: 복제한 사람은 유상으로 판매중인지?
- 김선화 선임: 블로그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된 상태인데 다만 광고가 여러 형태로 많이 달려 있음. 광고 수익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해당 출판물이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6번에 대해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7번 내지 5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3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인 '■■■■',

‘★★★’, ‘◆◆’, ‘♥♥♥’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로 연결되어 웹툰 불법복제물을 감상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링크 정보를 통해 접속 가능한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들은 대부분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7번 내지 58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7번 내지 5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자막 공유 게시물 총 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직접 번역하여 자막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원저작물은 국내 미개봉된 극장판 애니메이션 ‘♡♡♡♡♡ ♡♡, ♡♡♡ ♡♡’로, 일본에는 작년에 개봉하였고, 국내 개봉일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임.

현재는 블로그가 비공개 상태로 바로 확인할 수 없으나, 증거 자료 및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이미지 등으로 해당 블로그에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다수의 애니메이션 자막파일이 게시되어 있었으며, 각 게시물에는 광고가 함께 게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을 제공중인 점, 광고 등이 게재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이기는 하나 국내 유통되지 않은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추후 국내 개봉 시 합법시장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또한, 게시물이 삭제된 것이 아니고 블로그가 비공개 상태인 것으로, 언제든 다시 공개 상태로 변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가결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전 심의에서도 비공개 블로그 안전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59번 영상물의 자막을 제공 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이전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면 부결한 적도 있음.
- 김선화 선임: 이전 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결과가 달랐음. 각 결과와 근거는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해당 안건은 광고가 4건 게재되어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9번은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번 내지 335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6,62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택배기사'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2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택배기사'임. 2023. 5. 12.부터 넷플릭스에서 독점 제공 중인 드라마의 6개 전체 회차를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69번은 영화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로, 2023. 6. 6.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

입.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186번은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임. 2023. 5. 17. 에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2시간 20분 전체 분량을 모바일 바로보기로 제공중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60번부터 3351번까지 총 6,621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음악,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음악,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0번 내지 335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

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3-70856호~74206호(순번 1번~3351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5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3.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